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3. 13. (금요일), 15:00~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임돈희, 김영운, 김운미, 박성실, 박형철,
이영희, 인묵, 전경욱, 최성자, 함한희(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동해안별신굿’ 명예보유자 인정 | 공개 |
|---|----------------------------------|----|

【검토사항】

- | | | |
|---|------------------------------|----|
| 1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인정 예고 | 공개 |
|---|------------------------------|----|

- | | | |
|---|------------------------------|----|
| 2 |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 공개 |
|---|------------------------------|----|

- | | | |
|---|--------------------------|-----|
| 3 | ‘벼루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비공개 |
|---|--------------------------|-----|

- | | | |
|---|---|-----|
| 4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비공개 |
|---|---|-----|

【보고사항】

- | | | |
|---|--------------------------------|----|
| 1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보고 | 공개 |
|---|--------------------------------|----|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2-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4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4.12.12.)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보유자 김영희를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4.12.29.~)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 지정일 : 1985.2.1.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김정희(‘47년생, 남 / 장고, ‘06.6.19. 인정)
김영희(‘45년생, 여 / 무녀, ‘06.6.19. 인정)
 - 전수교육조교(4명) : 김정희(남 / 악사, ‘06.4.17. 선정),
김동연(여 / 무녀, ‘06.4.17. 선정)
김영숙(여 / 무당, ‘14.12.16. 선정)
정연락(남 / 악사, ‘14.12.16.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 일자/장소 : 2014.11.8.(토) / 동해안별신굿보존회 전수교육관
- 확인자 : 강석훈 학예연구사(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조사대상자 : 김영희(‘45년생, 여 / 무녀, ‘06.6.19. 인정)

3) 확인결과

- 김영희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함.

4) 예고사항(관보 제18418호 / 2014.12.29. / 문화재청 공고 제2014-347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설립연월일)	기예능	주소
제82-1호 동해안 별신굿	명예보유자 인정	김영희	여	1945.6.7.	무녀 (巫女)	619-702 부산 기장군 기장읍

- 예고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보유자 김영희는 보유 기·예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평생 노력을 다해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조사 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가결함
 - 김영희를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마.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2-002

1.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단 사전회의(‘13.8월)를 거쳐 관계전문가 현장조사를 2회(‘13.11월, ‘14.12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개인)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 지정일 : 1971.9.13.
- 전승자현황
 - 보유자(시장, 3명)
 - 유평기(‘36년생, 남 / 시장(矢匠), ‘96.12.10. 인정)
 - 박호준(‘44년생, 남 / 시장(矢匠), ‘08.5.7. 인정)
 - 김종국(‘40년생, 남 / 시장(矢匠), ‘08.5.7. 인정)
 - 전수교육조교(궁장 2명, 시장1명)
 - 김윤경(남 / 궁장(弓匠), ‘09.9.17. 선정)
 - 김성락(남 / 궁장(弓匠), ‘09.9.17. 선정)
 - 유세현(남 / 시장(矢匠), ‘04.3.20.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2)
-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3.2월 / 신청인 4인)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3.8.29.)
 -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항목 중 '전승자 평판' 부분 제외
- 현장조사 실시('13.11.2.~11.3., '14.12.12.~12.13.)

3) 현장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대상자 : 권영학(예천, 경북 예천공장 보유자),
김성락(예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김윤경(부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주장웅(세종, 세종시 전의궁인 보유자)
- 공방조사 : '13.11.2.~11.3., '14.12.12.~12.13. / 조사대상자 공방
 - 1차 조사 : 공방시설, 재료·도구, 작품, 목작업, 뿔작업(부각하기) 등 조사
 - 2차 조사 : 심농이(장심농기), 해궁 작업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 현장조사 결과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권영학의 기량이 우수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
-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에서 궁장의 보유자가 없으므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권영학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권영학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인정 예고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함.
 -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함
 - 단, 예고 결과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는 소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바.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결과, 신청인 중 최종점수 상위자 1인(이형근)에 대하여 심층 기량 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토록 함에 따라 ‘15.2월 심층기량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방짜유기 제작)
- 지정일 : 1983.6.1.
- 전승자 현황
 - 보유자 : 없음
 - 전수교육조교(1명) : 이형근(남 / 방짜유기 제작, ‘90.10.10.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2.)
- 전승자 신청 공고 및 접수(‘13.2.19.~3.20. / 신청인 10인)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4.10.6.)
- 현장조사 실시(‘14.11.12. / 11.19. / 11.26. / 12.10.)
- 심층기량심사 실시(‘15.2.23.~2.26.)

3) 현장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대상자 : 이점식(함양), 이경동(거창),
이종덕(김제), 이형근(문경)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및 조사자 사전회의 시연 과제
<시연과제>
 - ▲ 품목은 대야(밑판 직경 30cm)로 하며, 공정은 바둑은 사전 준비,
제작시연은 네뿔질에서 가질까지 함.

4) 심층기량심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인
- 조사대상자 : 이형근
- 심사기간/장소 : '15.2.23.~2.26. / 조사대상자 공방(경북 문경)
- 심사방법 : 요강 제작
 - 조사기간 내에 바둑만들기(용해)부터 제품 완성까지 전 과정을 시연함

라. 검토의견

- 심층기량심사 검토의견을 종합해보면, 조사대상자는 원대장으로서
방짜유기 제작의 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전통
적인 유기 제작방식을 매우 훌륭하게 계승하고 있어 중요무형 문화재
유기장 보유자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심층기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이형근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인정 예고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함.(논의 시, 방짜유기 기능
보유자 인정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것)
 -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5-02-004

3. '벼루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4.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2-006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보고

가. 제안사항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의 기준에 맞춘 무형문화재의 지정 범위 확대와 무형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정을 추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5.3.3.)됨에 따라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12.11.7.)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13.6.17.) 및 공청회(14.4.15.)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15.2.2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5.3.2.)
- 국회 본회의 의결(15.3.3.)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주요사항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제정안)	비 고
용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이북5도무형문화재	

주요사항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제정안)	비 고	
무형문화재 범위	기능, 예능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유네스코 협약의 카테고리 한국적 수용	
보전원칙	원형유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무형≠원형	
지정제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추가	아리랑, 김장문화 등	
이수증 심사 발급 주체	보유자(보유단체)	문화재청장이 심사를 거쳐 발급	기량 강화	
전수교육제도	도제식 전수교육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추가 (전수대학 선정, 재정지원 등)	시대적 변화 반영	
진흥정책	전승공예품 인증제	신설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 국가 인증	시장신뢰성 증대
	전승공예품 은행제	신설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체계적인 작품 구입, 수요기관 대여, 현지 전시 지원	공예품 수요증대
	창업·제작·유통 지원	신설	무형문화재 전승자 창업 지원 전통공연 브랜드화 사업 지원 전승공예품 유통망 구축 지원 등	자생력 확대, 관광자원화
	국제교류 지원	신설	무형문화재 국제교류(공연, 전시 등) 지원 전승공예품 해외판로 개척 및 지원	해외선양
지식재산권	신설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제특허취득 예방, 전래된 기술체계 지식재산권 불인정, 창조된 영역 지식재산권 인정	공유 확대, 창작의욕 고취	
전승자 권리	신설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제3자의 명칭 사칭 금지	전승질서 확립	
무형문화재 진흥사업 지원	한국문화재단 일부 기능 수행	한국문화재단 내 한국무형문화재 진흥센터 신설	무형문화재 진흥정책 집행기관	

라.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10명

바. 특기사항 : 없음.